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 12. 16 / (총 10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김 민 정	전화	044-202-1711
	담당자	김 종 덕		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팀 장	정 통 령	전화	044-719-9370
	담당자	유 효 순		044-719-9356
	담당자	박 장 호		044-719-9350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조 우 경	전화	044-202-1720
	담당자	안 웅 식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팀 장	차 전 경	전화	044-202-1790
	담당자	오 승 민		044-202-1792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팀 장	정 태 길	전화	044-202-1861
	담당자	정 현 진		044-202-186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과 장	정 의 경	전화	044-204-7821
	담당자	김 승 택		044-204-7826
고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 진 용	전화	044-203-6729
	담당자	김 희 준		044-203-647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1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11월 1주 ~ 12월 3주(잠정) >

구분	11월 1주 (10.31.~11.6.)	11월 2주 (11.7.~11.13.)	11월 3주 (11.14.~11.20.)	11월 4주 (11.21.~11.27.)	12월 1주 (11.28.~12.4.)	12월 2주 (12.5.~12.11.)	12월 3주 (긴급평가) (12.12.~12.15.)
전국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비수도권	매우낮음	매우낮음	중간	중간	중간	매우높음	매우높음

○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신속한 대응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6.4%,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132.6%
*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2.9%,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88.1%

-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365명)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수(%): (11.1주) 4,416명(29.6% → (12.2주) 14,245명(33.5%)

○ **(발생 지표)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다.

-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12.1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11.1.)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 60세 이상 발생 분석(분석 기간: 11.14.~11.27. 기준)

구분	계 (60세 이상)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불완전접종 포함)
60세 이상 확진자	16,066명(100%)	13,830명(86.1%)	2,236명(13.9%)
60세 이상 위중증	470명(100%)	268명(57.0%)	202명(43.0%)

-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3차 접종률: (80대이상) 63.3%, (70대) 59.2%, (60대) 34.3% 순

- 또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인(11.30.)된 이후, 16일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위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접종**이 **더욱 필요**하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11월 1주 ~ 12월 3주(~12.15. 잠정) 위험도 평가지표

구분	지표명 (★핵심지표)	11월1주 (10.31. ~11.6.)	11월2주 (11.7. ~11.13.)	11월3주 (11.14. ~11.20.)	11월4주 (11.21. ~11.27.)	12월1주 (11.28. ~12.4.)	12월2주 (12.5. ~12.11.)	12월3주 (12.12. ~12.15) 4일 통계
대응역량	★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46.6	56.0	62.6	70.6	78.3	79.1	81.6
	수도권	59.3	69.5	77.0	83.4	87.8	84.9	86.4
	비수도권	26.1	34.9	40.1	50.3	62.8	68.5	72.9
	①-1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수(명)	365	447	498	576	697	807	910
	★②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42.7	43.4	54.7	70.0	87.8	110.3	117.2
	수도권	54.4	55.2	70.1	89.5	111.2	127.5	132.6
	비수도권	23.5	24.3	29.5	38.3	49.8	77.7	88.1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53.8	59.0	61.6	67.3	70.2	71.9	76.5
	수도권	71.6	75.8	76.5	76.2	76.5	77.2	79.0
	비수도권	38.5	44.5	48.8	59.5	64.7	67.3	74.2
	④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45.6	49.7	52.0	59.9	64.6	67.6	67.1
	수도권	55.7	60.1	62.2	69.6	71.1	71.8	70.4
	비수도권	24.3	28.6	31.2	40.5	51.3	58.9	60.6
	④-1 재택치료자 비율(%)	22.1	22.7	23.4	31.4	45.1	50.4	-
	⑤ 방역망 내 관리 비율(%)	40.0	37.5	39.0	33.7	32.3	27.6	-
발생	⑥ 주간 사망자 수(명)	126	127	161	248	317	401	247
	★⑦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수(명)	263	339	346	477	530	615	-
	⑦-1 중증화율(%)	(10월) 2.05%, (11월 3주) 2.90%, (11월 4주) 2.56%						
	⑧ 주간 입원환자 수(명)	3,335	3,283	3,649	4,322	4,716	5,623	3,129
	⑨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명), 국내	2,133	2,172	2,733	3,502	4,392	6,068	6,448
	수도권	1,686	1,711	2,173	2,774	3,446	4,592	4,774
	비수도권	447	461	560	728	946	1,476	1,674
	⑨-1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4.1	4.2	5.3	6.8	8.5	11.7	12.4
	수도권	6.5	6.6	8.3	10.7	13.2	17.6	18.3
	비수도권	1.7	1.8	2.2	2.8	3.7	5.7	6.5
	★⑩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29.6	32.6	35.7	34.9	35.8	33.5	31.7
	⑩-1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4,416	4,959	6,834	8,556	11,010	14,245	8,179
	⑪ 확진자 중 미접종자(불완전접종포함) 비율(%)	43.9	36.3	31.0	29.2	27.8	-	-
	⑫ 감염재생산지수(Rt)	1.21	1.05	1.10	1.19	1.16	1.23	-
	⑬ 검사양성률(%)	1.54	1.60	1.82	1.97	2.19	2.46	2.95
	⑬-1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형) 검출률(%)	-	-	-	-	0.3	1.3	-
예방접종	⑭ 2차 접종률(%)	76.6	78.1	78.8	79.6	80.4	81.1	81.4
	⑮ 60세 이상 2차 접종률(%)	91.4	91.9	92.0	92.2	92.3	92.5	92.6
	★⑯ 60세 이상 3차 접종률(%)	1.9	4.2	7.5	12.2	18.1	31.4	42.1
	⑰ 예방접종효과(완전접종군)	감염예방효과 11월4주 기준 57.6%		위중증 예방효과 11월4주 기준 92.1%		사망예방효과 11월4주 기준 90.7%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 **(의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 1일 이상 대기자 1,533명(12.13.), 입원대기 중 사망자 30명(11.28.~12.11.)으로 지속 증가 중

- **(방역대응)**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11월 1주) → 6,448명(12월 3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 방역망내관리비율: (11.1주) 40.0% → (12.2주) 27.6%

2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위중증/사망자수: (미접종자) 242명/114명, (접종자) 288명/103명 (11.21.~12.4. 기준)

- **(3차접종률)**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나,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명): (11.3주) 856명 → (11.4주) 616→ (12.1주) 1,084 → (12.2주) 55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3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 **(전 연령대 증가)**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 **(낮은 접종률)**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 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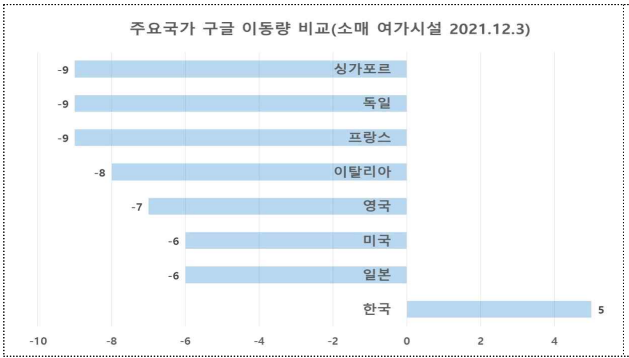
구분	접종완료율(12.15.기준)		발생률(10만명당)				
	1차	2차	11월2주	11월3주	11월4주	12월1주	12월2주
12~15세	44.5%	24.9%	7.1	9.1	10.2	12.4	17.2
16~17세	74.4%	67.5%	6.6	6.0	4.9	6.0	7.4
18세	95.5%	94.6%	1.8	2.3	3.6	4.0	6.9
20~59세	94.5%	92.2%	3.3	4.0	5.3	6.4	9.1

- **(낮은 접종률)** 아직 약 **128만명**(12~17세)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등교**(11.22.~)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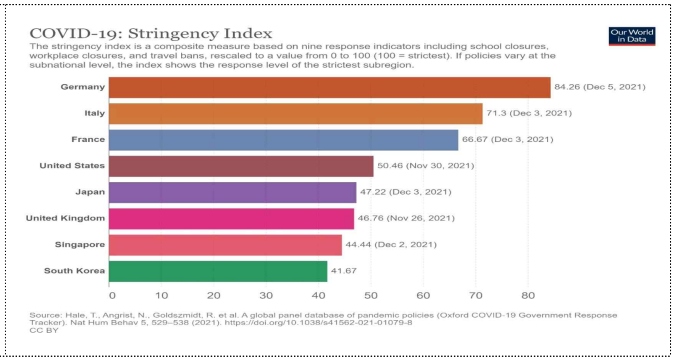
4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구글이동량 (소매 및 여가시설)>



<엄격성 지수 (아워월드인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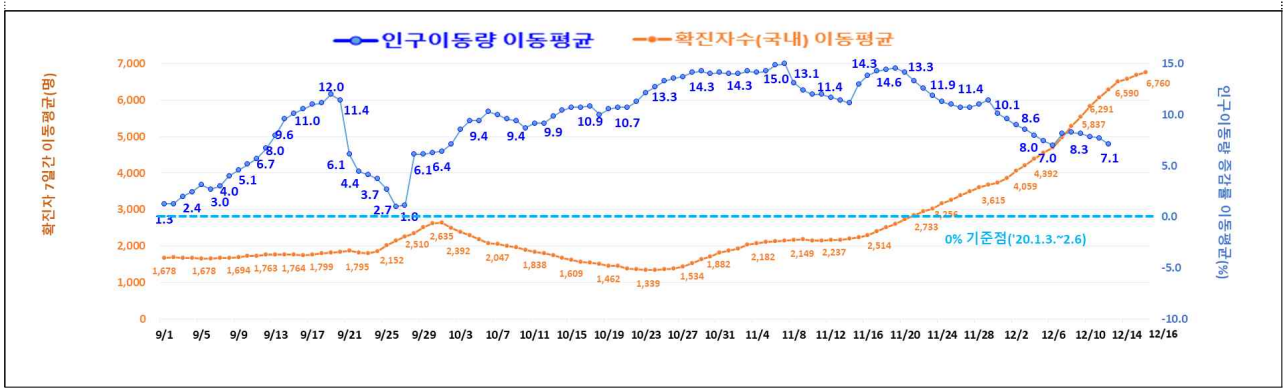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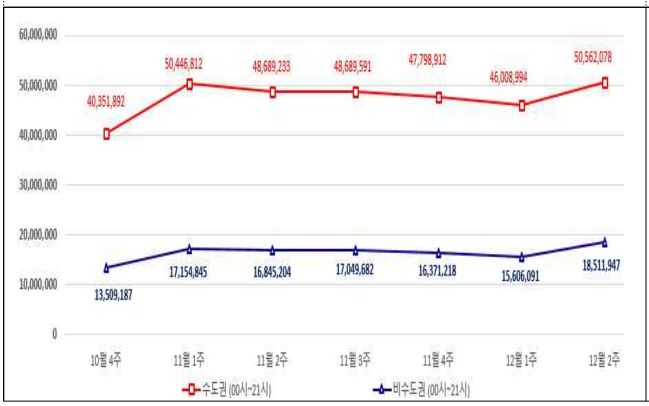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인구이동량)** 특히,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 추세이나**, 기준점 대비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12.12.)이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 인구이동량 및 확진자수 이동평균(9.1.~12.15.) >



<QR코드 등록 횟수(0시~21시)>



<QR코드 등록 횟수(21시 이후)>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0.11월(사망자 62명)** 대비 **'20.12**(374명)~**'21.1월**(520명)에 위중증·사망이 크게 증가한 점 고려 시 향후 피해규모 더 증가할 우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현행	변경(12.18.~)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또는 ② 선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현행	변경(12.18.~)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3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우선,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20.12.18., '21.8.13., '21.9.10., '21.11.5., '21.11.12., '21.11.24., '21.12.1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진행 상황 및 운영예정일, 이행 곤란 사유 파악 및 설비·인력 등 적극 지원

-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추가 지정(12.9.)

** 서울 혜민병원(12.6. 지정), 인천 뉴성민병원(12.8. 지정),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12.2. 지정)

○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현재 7개소, 추가 운영 6개소),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수도, 고양) 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국군포천)을 추가 운영

○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12.1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 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4 재택치료 내실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11월4주 대비, 12월2주 기준)로 크게 늘었다.

* 수도권 37.3%→65.5%, 비수도권 9.0%→40.2%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 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 **(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 **(이송체계 확대)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 **(가족 부담 완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다(12.3 대비, 12.15 기준).

-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12.20 예정)**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5 치료제 적극 활용 및 선별검사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생활치료센터 내 주사실 구비, 냉장보관(2~8℃), 투여 후 이상 반응 보고 등 치료제 사용지침 준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하여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민간위탁 형태〉

▲ (일괄위탁) 민간(수탁기관)에서 진단검사전문의 관리·지도하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총괄, (1)접수안내 (2)검체채취, (3)자료입력 (4)검체이송 (5)진단검사까지 원스톱 * (기시행중) 서울, 대전, 광주

▲ (일부위탁) 설치비, 운영비, 인력(의료진, 행정인력) 등 지자체와 민간수탁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 위탁하여 운영 * (기시행중) 대전, 서울, 울산, 대구

○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전문 수탁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인력, 검체 채취, 검체검사 등의 위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6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접종간격 단축)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였다.

* (영국, 11.29) ▲3차접종 대상확대(40세 이상→18세 이상) 및 ▲간격 단축(6개월→3개월)

-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 하였다.

* 예약접종과 현장접종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현장접종 비율이 높음 (12.13 기준 예약접종 25만건, 현장접종 50만건)

○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고령층 3차접종 건수) (12.1) 12.2만 → (12.8) 23.3만 → **(12.10) 62.9만**

○ **(홍보강화)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매주, 질병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통장** 통한 개별안내(지자체)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하고 있다.**

□ **청소년 접종 독려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편의 제공)**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단체 접종)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방법)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12.6.~12, 교육청) 결과, **약 8.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하여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 **교육부가 설정**한 **집중접종지원주간**(12.13~24) 동안 **집중 실시**, 필요시 기간 확대

□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

○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잠시 멈춤'**(12.18.)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연기하여 시행**한다.

7 소상공인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붙임 >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 답변
5. 감염병 보도준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격리시점(격리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 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은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PC방 ▲ 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함(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Q21.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2.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3.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 · 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미접종자**는 불허)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❶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❷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 · 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❶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❷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2 전시회 · 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❶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6㎡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❷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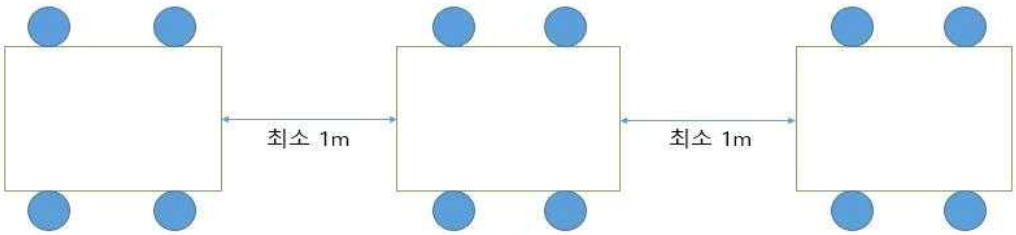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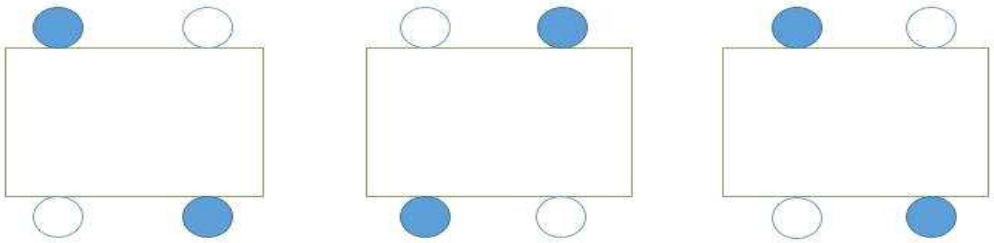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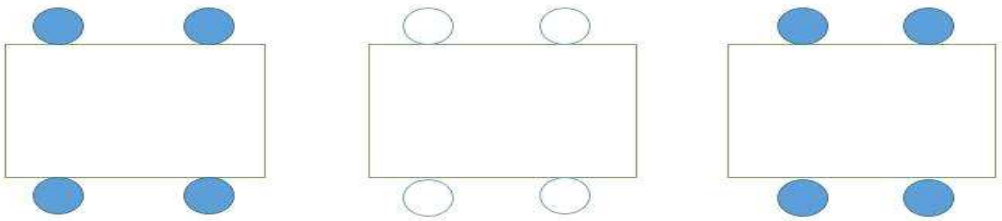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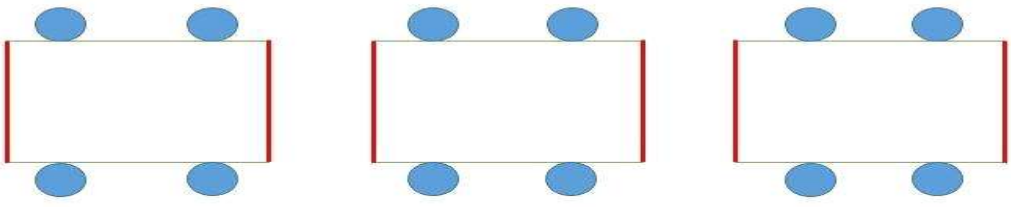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3 방역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1] 개요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2]	△[2]
식당·카페	○	○	○	○
학원 등	○	○	○	○
영화관, 공연장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파티룸	○	○	○	○
도서관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	○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2-2. PCR 음성확인자 〉

Q10.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2-3. 의학적 예외자 〉

Q13.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17.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8.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9.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2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2.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23.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Ⅰ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 다른 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대상자	ㅇ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ㅇ 백신 접종 완료, 만 12~69세,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	ㅇ 중증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요양**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ㅇ **재택치료 원칙**
건강 관리	ㅇ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ㅇ 1일 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 ㅇ 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ㅇ 앱(라인) 기반 환자가 1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 ㅇ 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ㅇ 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 ㅇ 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 이송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ㅇ 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ㅇ 보건소 중심	ㅇ 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생활 관리	ㅇ 전담공무원 배정, 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ㅇ 위반 시 고발조치 등	ㅇ 보건부에서 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시 벌금 또는 징역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	-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ㅇ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ㅇ 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ㅇ 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ㅇ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	ㅇ 가족 구성원들도 10일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ㅇ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5.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Q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7. 추가 생활지원비를 백신 접종자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Ⅱ 대상자 선정 관련

Q8.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의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9.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10.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Ⅲ 키트 등 물품 지급 관련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공통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2.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질병관리청

개인보호구세트



자가검사키트(COVID-19 Home test)는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용 하십시오



폐기물 소독 시 사용하세요



자가치료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때 개인보호구를 사진과 같이 착용해 주세요
안면보호구는 세척용 소독제를 사용해 세척해 주세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Q13.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Ⅳ 건강관리

Q1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응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2.7. 현재 6개소 운영 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6.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7.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느 의료기관이며,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21.12.7.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진료를 시작**한 기관은 **서울 2개소*, 경기 4개소****이고, **설치 협의중인 곳은 35개소**입니다.

*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평택박애병원

- 시·도 내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하였고(~12.8.), **중진료권***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경계와 인구 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 '19. 서울대 김윤)

<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15만 이상)
◇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60분 이내)
◇ **(의료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30% 이상)
◇ **(시도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8. 건강 모니터링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관리의료기관에 의해 **7일 간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간호인력 등 **담당자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 대상자가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언제든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기관에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19.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즉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됩니다.

○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합니다.

* '20.10월 이후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의 병원 전원율 4.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1.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으셔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Ⅴ 생활관리

Q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3.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7.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의 보호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Ⅵ 격리관리

Q28.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됩니다.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29.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자는 **병원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0.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1.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2.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됩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3.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변경**(10일→7일)되지만('21.12.6. 이후), 격리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Q34.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유증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됩니다.

◇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 간 지속되는 경우,**

- 10.1. 12시에 증상 발생 → 10.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 10.9. ~ 10.11.(자가격리) → 10.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확진일이 10월1일 이전이었어도 10월 1일부터 격리기간 산정

◇ **(예시 2) 확진일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사례**

- 10.1. 증상 발생 → 10.3. 확진 → (증상호전) → 10.7. 자가격리→ 10.11. 12시 격리해제

* 10.3. 확진→ 10.11. 격리해제

Q3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2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6.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를 세어 격리 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검사받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7.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Ⅶ 재택치료 인프라

Q38. 재택치료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요?

○ 12.3. 기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수도권 86, 비수도권 130)이며, **13,856명**(수도권 12,729, 비수도권 1,127)이 **관리 중**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재택치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구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재택치료를 부단체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여력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39.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기준이 있나요?

○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희망하는 기관으로,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춘 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Q40.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 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후 **이송 수단 등을 마련**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